

# 순천대학교 학사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2006. 2. 24.  
개정 2007. 6. 26.  
개정 2009. 11. 6.  
개정 2010. 10. 27.  
개정 2012. 11. 16.  
개정 2018. 3. 3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순천대학교학사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2. 학점 인정에 관한 중요사항
3. 학사 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및 연구 개발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되며, 위원은 학생부처장, 기획부처장, 교무과장, 학사지원과장 및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(개정 2007.6.26, 2009.11.6, 2010.10.27., 2012.11.16., 2018. 3. 30.)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학사지원과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**제8조(기타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 (2006. 2. 24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11. 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10. 2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11. 1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3. 30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개정)

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순천대학교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양기초교육원장”을 삭제한다.

⑧부터 ⑩까지 생략

제3조(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) <생략>